

「구미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신용하 의원 외 2인

2. 찬 성 자: 김근한 의원 외 7인

3. 제안이유

-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적용범위(안 제3조)
- 지원대상 및 보조금의 지원기준 등(안 제4조~제5조)
- 보조사업의 종류 및 보조금의 신청 등(안 제6조~제7조)
-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(안 제8조)

5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건축법」 제11조 및 제22조
 - 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3조
 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제1항

6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유지·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「건축법」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여, 옥상 방수, 우·오수관 정비, 용벽·담장 보수 등 주민 안전과 직접 관련된 공용시설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, 사업 내용 변경 시 승인 절차,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정산 보고 의무 등을 명시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- 다만, 유지·보수가 시급한 소규모 공동주택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행 초기에는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.